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발의자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차재홍 의원 외 7명	1

(2015. 10. 2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2일(목)
- 제 출 자 : 차재홍 의원 외 7명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10월 22일(목)

4.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조의2, 제12조, 제15조, 제20조
~ 제2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의 제한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라. 안전감시망 구축 및 안전관리 의무이행(안 제5조 및 안 제 6조)
- 마. 업무의 분담 및 관리 감독(안 제7조 및 안 제 8조)
- 바.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안 제9조)
- 사. 예산확보 및 표창 등(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하는 것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11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안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나. 안 제3조~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흡연, 음주, 가무 등 금지사항에 대한 위반 시에는 퇴장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 제5조~안 제6조에서는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해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활용할 수 있음

라. 안 제7조~안 제8조는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장소에 따라 관련 해당 업무부서가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마.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

바. 안 제10조~안 제11조는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15.10.22.~10.26.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상위법에 대한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말 현재 335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으며, 설치장소가 도시공원 52개소, 주택단지 238개소, 식품접객 2개소, 아동복지 2개소, 어린이집 40개소와 놀이제공 업소 1개소로 대부분이 주택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는 대부분 공동주택 단지로 구(區)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놀이시설의 경우는 관리주체에서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의 원인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만 중점을 두고 설치 이후 관리는 소홀히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주체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구청장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을 두도록 하고 있는 이번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40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교육) 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③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72호, 2015.6.30., 일부개정]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